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승인번호 및 승인년월일 : 2026-87호(2026. 10. 7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임시가교 설치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6-8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 : 332㎡(2026. 10. 8. ~ 2029. 10. 7.)
5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- 성 명 : 진해구청장
 - 주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

2026. 10. 7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